

1. 개정 이유

재해방지 또는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에 필요한 복구·복원비의 단위면적당 산정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하기 전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절차적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타 법률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법령명, 인용조문 등을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법령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위면적당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고시 절차 정비(안 제11조제2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재해방지 또는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에 필요한 비용(복구·복원비)의 단위면적당 산정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하기 전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타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인용법령명, 인용조문 등 정비 (안 제10조제1항, 제11조제5항, 제14조제2항)

-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정정

-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정정
- 3) 제14조제1항에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특이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4. ~ 5.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마련하여”를 “마련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형질변경등을 하려는 토지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토지의 경계 및 면적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 4. (생 략)

② (생 략)

제11조(복구·복원비의 예치) ①
(생 략)

②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복구·복
원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고시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단위면적당 복구·복원비 산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③ · ④ (생 략)

⑤ 관할청은 제4항에 따라 복구
· 복원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4조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복구·복원비의 예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마련하여 「산
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
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 -----

-----.

1. ~ 6.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하는 증서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복구·복원비 지급을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4. (생략)

⑥ (생략)

제14조(민북지역산지관리단 조직)

① (생략)

② 관리단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강원도에 지부를 둘 수

---.

1. · 2. (현행과 같음)

3. -----

「기술보증기금법」-----
--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
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
도시보증공사-----

4.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민북지역산지관리단 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강원특별자치도-----

있다.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